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문신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 예정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의 문신의 내용 및 기준란 중 “**시술동기, 의미 및 크기가**”를 “**내용
및 노출 여부에 따라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정책담당관	
연 락 처	02-3150-2832